

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8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 및 사업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(안 제1조)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 → 제12조의3
- 나. 사업내용 정비(안 제2조, 안 제3조)
 - 노인세대 및 한부모세대의 정의 구체화
 - 지원대상 내용 추가

3. 근거법규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다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5. 10. 21. ~ 2015. 11. 10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”를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”으로 한다.
제2조제1호 중 “68세 이상 노인세대(이하 “노인세대”라 한다)”를 ““노인세대”로, “이상인”을 “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 “한부모세대”라 함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(또는 조부모)와 만18세 미만(취학 시 만22세 미만)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.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만인”을 “미만이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질병·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68세 이상 노인세대(이하 "노인세대"라 한다)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8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. 2. (생략) 3. "한부모세대"라 함은 부모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한다. <p>제3조(지원대상) 국민건강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단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등 다른 법률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.</p> <p>1.3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노인세대"----- -----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"한부모세대"라 함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(또는 조부모)와 만18세 미만(취학 시 만22세 미만)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. 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미만이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----- -----.</p> <p>1.3. (현행과 같음)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187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5. 11. 20.(금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5. 11. 23.(월)
- 위원회심사 : 2015. 12. 10.(목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종경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 및 사업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(안 제1조)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 → 제12조의3
- 사업내용 정비(안 제2조, 안 제3조)
 - 노인세대 및 한부모세대의 정의 구체화
 - 지원대상 내용 추가

4. 근거법령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강기환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조문변경 및 사업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 - 주요내용으로는
 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
 - 노인세대 및 한부모세대의 정의를 구체화 하는 것임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